

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황유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8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2일

발 의 자: 황유정, 강석주, 김 경,
김혜지, 남궁역, 박춘선,
신동원, 신복자, 유만희,
유정인, 윤영희, 이소라,
이종배, 이종태, 정준호,
최호정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난임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, 다수의 환자가 의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2018년부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, 난임극복 지원 사업의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「한약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제1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모자보건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지원사업”을 “지원사업. 이 경우 「한의약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4646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지원사업”을 “지원사업. 이 경우 「한의약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공포 후 시행 전 조례안 (서울특별시조례 제4646호 2024. 3. 15. 공포, 2025. 1. 3. 시행)	개정 조례안 (2025. 1. 3. 이전에 공포 시행 예정)
<p>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난임치료를 위한 <u>시술비 지원사업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7조(지원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유산·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유산·사산 예방</p>	<p>제7조(지원사업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지원사업.</u> <u>이 경우 「한의약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<p>② (생 략)</p>	<p>을 위한 교육·정 보제공 지원사업</p> <p>2. 유산·사산부부 에 대한 상담·심 리 지원사업</p> <p>3. 그 밖에 유산· 사산극복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지원사업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

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(지원사업)제1항제1호를 변경·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확인결과 현재 기추진사업(붙임 참고)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 (본 안 제7조 관련)

(단위: 천원)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
사무관리비	○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교육 및 사업모니터링 평가용역 등 = 22,000 22,000,000원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운영 = 278,000 278,000,000원

주 : 제7조(지원사업)제1항제1호 관련 예산은 총 300,000천원임

자료 : 2024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추계분석관 손제승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[붙임] 2024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 (본 안 제7조 관련)

사업목적

-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4.1월 ~12월(연례반복)
- 지원대상 : 서울시 거주 원인불명의 난임부부
- 사업내용
 - 난임부부 대상 한의약 난임치료 협약비 지원(부부 공동 또는 남녀 단독)
 - 지정 한의원 및 보건소 담당자 교육, 사업홍보 등
 -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기술지원 및 결과분석 위탁 지원단 운영
- 소요예산 : 300,000천원(전액 시비)

향후 기대효과

- 난임부부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으로 건강한 임신 및 출생을 향상 도모

자료 : 2024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예산설명서 발취